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‘신혼부부 결혼·살림 비용 지원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신혼부부 결혼·살림 비용 지원 근거 신설(안 제4조의9 신설)

-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
- 자치구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

나. 그 밖의 문구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
- 의견내용: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위법·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처리 조항 마련 필요
- 반영사항: 사업 실행 방침 수립 시 지원금 환수 등 내용을 포함하며, 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수하는 방안을 시스템에 구현 예정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5. 2. 13. ~ 3. 5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준열 (☎ 2133-5025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가
목 중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”를 “「근로복지기본
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산업재해보상보
험법」 제91조의15”를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”, ““노무제
공자“ 및 “플랫폼 종사자“”를 ““노무제공자” 및 “플랫폼 종사자””로 하
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예술인복지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예술인 복지
법」 제2조제2호”로, “으로 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의4”를 “으로 「예술
인 복지법」 제4조의4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
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노
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제6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
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4항제2호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”을 “「전자정부
법」 제3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

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 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4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4조의7제1항 중 “시에”를 “서울특별시에”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서울시”를 각각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9(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) ① 시장은 결혼·살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, “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기계획”이라 한다)”을 “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기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)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9의 신설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8. (생략) 9. “1인 자영업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 가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“1인 자영업자” 나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“노무제공자” 및 “플랫폼 종사자” 다. 「예술인복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예술인”으로 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. 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“프리랜서”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. 가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----- ----- 나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----- “노무제공자” 및 “플랫폼 종사자” 다.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예술인”으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라. 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“프리랜서”

마. (생 략)

제4조(결혼·임신·출산 지원) ①
~ ⑤ (생 략)

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
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
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
를 따른다.

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 ①
~ ③ (생 략)

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
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
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
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
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
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
있다. 단,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
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
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
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
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
계증명서(「전자정부법」 제38
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
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
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

마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결혼·임신·출산 지원) ①
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
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-
-----.

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「전자정부법」 제38
조제1항-----

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
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하
다)

3. (생 략)

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
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
하여야 하고, 지원 내역을 별지
제2호 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
품 지원대상자 명부, 별지 제3
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
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
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
리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⑥ ~ ⑧ (생 략)

제4조의7(공공예식장 대관료 감
면)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
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
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
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
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
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
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
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--

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별지
제2호서식-----
----- 별지 제3호
서식-----
--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7(공공예식장 대관료 감
면) ① -----
----- 서울특별
시에 ----- 사람이 ----
----- 서울특별시
----- 서울특별시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9(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

제8조(중장기 기본계획) ① 시장
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0조에
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
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
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
기계획“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
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용 지원) ① 시장은 결혼·살림
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
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·
살림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
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·살림
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
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8조(중장기 기본계획) ① 시장
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
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
----- 서울특별시
----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
“중장기계획”이라 한다)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
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
지원에 관한 적용례) 부칙 제1
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9의 신
설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
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
용한다.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9 제1항에 ‘신혼부부’에 대하여 ‘결혼·살림 비용’을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대 상 : 서울시 거주 19~49세 신혼부부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50% 이하
- 지 급 액 : 1가구당 100만원 실비 지급 (결혼·살림 비용 관련 영수증 증빙)
※ 혼인신고 6개월 전 및 신고 후 구매영수증
- 추계기간 : 혼인신고 1년 이내

3. 비용추계의 결과 : 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지출	○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100,645,000
	소계(a)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100,645,000
수입	○ 없음	0	0	0	0	0	0
	소계(b)	0	0	0	0	0	0
□ 총 비용(a-b)	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100,645,000

4. 재원조달 방안 :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	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100,645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20,129,000	100,645,000

5. 덧붙이는 의견: 없음

6. 작성자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준열 (☎2133-5025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시행기간: 비용은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사업개시 시점부터 발생 예정
-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: 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**최대 100만원** 환급 지원
 - 지원항목

- **결혼준비** : 혼수, 예식장, 신혼여행, 앨범제작, 청첩장 등 (※ 스드메, 공공예식장 미포함)
- **혼인살림** : 전자제품, 주방기전, 소형기전, 가구, 주방용품, 침구류 등

○ 지원 대상 가구수 계산

- 2023년 만19~49세 서울시 거주자 혼인건수 : 33,548건
-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비율 : 77.3%*

*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작성방법 및 의의

- 중위소득 150% 이하(연소득 약 7천만원) 신혼부부 비율 : 56.2%

※ 2023년 전국 초혼 신혼부부 769,067쌍 중 소득 7천만원 미만 신혼부부는 432,031명으로 56.2%

- 통계청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했을때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는 77.3%,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고려했을때 56.2%이나, 서울시 인구대비 청년비율·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를 **전체 가구 중 약 60% 비율**로 설정
- **33,548건 x 60% = 약 20,129건**

○ 비용추계 산식

- 신혼부부 1가구당 최대 100만원 x 20,129가구 = **20,129,000,000원**